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8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 15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현행 운용중인 사무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규정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사무 신설 (환경과)
 - o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·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(군 허가대상외 건축물)
- 사무명 조정 (수산과)
 - o 어업신고 → 신고어업 (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~3호에 한함)

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중 "환경과"란, "수산과"란을 각각 "별지"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1]

권 한 위 임 사 항

소 관 별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 고
환 경 과	1 ~ 6 생략(현행과 같음) 7.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(군 허가대상외 건축물)	생략 (현행과 같음)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26조, 제33조 제2항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	
수 산 과	1. 신고어업 (시행령 제33조 제1항 1~ 3호에 한함)	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	